

인천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70370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703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단26136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변론 종결2020. 11. 11.

판결 선고2021. 1. 20.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단26136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7. 피고가 운영하는 C 인천 청라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차권, 시설 및 운영권을 350,000,000원(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주방기기 및 시설비 1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월별 결제수단 현황'을 보여주었다. 위 자료에는 이 사건 매장의 연 매출액 합계가 2014년에는 931,804,130원, 2015년에는 915,953,400원, 2016년에는 1,048,433,67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1. 23. C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매장의 '월별 매출 객수 객단가 조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매장의 2017년도 매출액 합계는 801,122,990원이고, 2017. 6. 매출이 전년대비 25.8% 감소하고, 같은 해 7.부터 12.까지의 매출은 전년대비 적게는 33.6%부터 많게는 44.1%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매출이 하락한 2017년도 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2017년도 매출 내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경부터 24시간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였으며 2017. 7.경 D회사 햄버거병 논란이 발생하여 2017년도 매출이 30~40% 감소하였음을 구두로 모두 설명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매출 감소를 반영하여 시설비(3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며(같은 조 제3항),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 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C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해당 매장의 매출 및 수익 상황이 매우 중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으므로, C의 기존 가맹점인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 시설 및 운영권을 일괄 매도하는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매출 및 수익 상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제1심 증인 E, 이 법원의 증인 G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가맹점 전산시스템에서 곧바로 일별, 월별 매출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고에게 2017년도 매출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도 매출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도 매출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 ① 제1심 증인 E, 이 법원의 증인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햄버거병 논란, 24시간 영업 중단으로 2017년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도 매출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2017년도에 당시 햄버거병 논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 감소 사실 및 그 정도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③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로 가맹사업자 평균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으나,

2017년도 매출액은 2018년 정보공개서가 등록됨으로써 공개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이전인 2017.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매장의 매출 정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협조 없이 C의 가맹본부인 F 주식회사에 요청하면 매출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매출상황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에게 가맹본부에 이 사건 매장의 매출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의 2017년도 매출상황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자료는 제공하면서도, 2017년도 매출자료에 관하여는 가맹점 전산시스템에서 곧바로 일별, 월별 매출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의 2017년도 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8. 12. 2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의사표시는 취소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09692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2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2.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이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제105조를 적용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